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8. 5. 19 『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』를 공포하여 2009. 1. 1부터 시행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 조례에 맞게 해당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「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」에서 「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20세 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,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,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」로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함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(경상북도조례 제3032호/ 2008. 5. 19공포, 2009. 1. 1시행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2007. 4. 26 이갑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(조례 제 0682호)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「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에 부합되게 수혜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「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」에서 「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20세 이하의 소년·소녀 가정세대,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, 만성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」로 지원 범위를 확대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만원 미만의 만65세 이상노인, 모부자가정,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계층 1,265세대에 대해 월평균 6,375천원 정도의 보험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2009년부터는 「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」 제8조 (예산확보: 도와 시·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) 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이 50% 예상됨에 따라 시자체 예산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수혜대상자는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되어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